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15
----------	-----------

제출연월일	2007. 6. 1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1. 제정이유

거창군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시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9조)

- 임부 산전진찰비 : 10만원 이내
- 임산부철분제 : 7개월분 이내
- 둘째아이 이상 육아용품 지원 : 10만원 상당 이내
- 둘째아이 출산장려금 : 100만원
-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 500만원

나.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4조)

- 지원대상 : 셋째자녀 이상 만5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
- 지원금액 : 정부지원단가 만5세아 기준

다.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내지 제19조)

- 지원대상 : 고등학교 재학중인 셋째이상 자녀
- 지원금액 : 고등학교 전 학기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라. 전입장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 전입세대에 대한 30만원 범위내 전입정착금 또는 이사비용, 10만원 범위내 전입기념품, 300만원 범위내 빈집정비 지원금,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전액, 50ℓ 20매 이내의 쓰레기종량제봉투, 10만원 범위내 전입대학생 장학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전액, 5매 이내의 문화예술 관람권 지원 등
-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마. 인구증가대책 추진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바. 지원금품 환수조치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7조
- (2) 「지방자치법」 제22조
- (3) 정부지원단가 만5세아 기준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 나. 예산조치 : 소요예산 및 확보 계획

- (1) 연간 소요예산 : 1,300백만원
- (2) 확보계획 : 200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2007. 4. 4 ~ 4. 23) 결과 : 의견 없음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이농,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거창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명확한 규정을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 “영유아양육비 지원”,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전입장려 지원” 등으로 구분 시행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부모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둘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 한다.
2. “산전진찰비”란 태아를 임신하여 분만 전까지 진찰(임부기초검사, 초음파, 기형아검사, 임신성당뇨검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3. “영유아양육비”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4. “학자금”이란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말한다.
5. “전입세대”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개월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6. “전입대학생”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하는 대학생을 말한다.
7. “신청인”이란 일정자격을 갖추고 인구증가시책 지원금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2장 출산장려 지원

제4조(업무관장) 출산장려지원 업무는 보건소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제5조(지원내용)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부 산전진찰비
2. 임산부 철분제
3. 둘째이상 자녀에 대한 육아용품
4. 둘째이상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제6조(지원대상 자격) ①제5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로 한다.(다만, 부모 또는 모가 사망이나 이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만 거주하여도 가능)  
②제5조제2호 지원대상자는 사유 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에 한한다.

제7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임부 산전진찰비 : 10만원 이내
2. 임산부 철분제 : 7개월분(임신5개월부터 분만 후 2개월) 이내
3. 둘째아이 이상 육아용품 지원 : 10만원 상당 이내
4. 둘째아이 출산장려금 : 100만원
5.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 500만원

②제1항 각 호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부 산전진찰비는 신청서에 따라 1회 전액 지급한다.
2. 임산부 철분제는 매월 1개월분씩 7개월간 지급한다.
3. 둘째아이 이상 육아용품은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4. 둘째아이 출산장려금은 신청서에 따라 1회에 전액 지급한다.
5.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 시 신청서에 따라 200만원을 지급하고, 그 후 3년간은 출생일이 있는 달에 신청에 따라 100만원씩 지급한다.

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제5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신청·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 산전진찰비 및 육아용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지원대상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5조제2호 임신부철분제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부 등록 후 철분제를 수령한다.

제9조(지원의 중단) ①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 자격 상실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 제3장 영유아양육비 지원

제10조(업무관장) 영유아양육비 지원 업무는 사회복지과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제11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은 셋째이상 자녀 중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만5세까지 지급한다. 다만, 만5세 이전에 취학한 경우에는 취학 전까지만 지급한다.

③경상남도 자체사업으로 시행중인 만4세 셋째아 보육료 지원대상자에게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12조(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단가 만5세아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13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영유아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의 중단) ①읍·면장은 영유아양육비 지원대상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1조제1항의 지원대상 자격 상실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그 달의 양육비가 지급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 제4장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제15조(업무관장)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업무는 전략사업추진단장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제16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고등학교 학자금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이상 자녀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

학교 재학을 위하여 군외에 일시 거주하는 학생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②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부터 졸업할 때까지 지급한다.

③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자는 그 금액상당을 제외한다.

제17조(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당해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1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지원의 중단) ①읍·면장은 학자금 지원대상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6조제1항의 지원대상 자격 상실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그 분기의 학자금이 지급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분기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 제5장 전입장려 등 지원

제20조(지원내용 및 업무관장) 군수는 인구증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규모·절차 등을 거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전입세대에 대한 30만원 범위내의 전입정착금 또는 이사비용 지원(행정과)

2. 전입세대에 대한 10만원 범위내의 전입기념품 지급(행정과)
3. 전입세대에 대한 300만원 범위내의 빈집정비 지원금 지원(도시건축과)
4. 전입세대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 전액 지원(종합민원실)
5. 전입세대에 대한 50리터 20매 이내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산림환경과)
6. 전입대학생에 대한 10만원 범위내의 장학금 지원(전략사업추진단)
7. 전입세대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 전액 지원(전략사업추진단)
8. 전입세대에 대한 5매 이내의 문화예술관람권 지원(교육문화센터)
9. 그 밖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소관부서)

## 제6장 보 칙

제21조(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 설립·운영)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시책을 협조, 지원하거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관 합동으로 거창군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인구증가 운동에 관한 사항
  2. 인구증가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의원, 기관단체·각급학교·기업체 등의 대표 또는 임직원과 인구증대시책에 관심이 있는 인사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협의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④협의회 위원중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⑤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통할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⑦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22조(환수조치 및 기록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본 조례에 규정된 지원금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각종 지원 내용과 환수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 한다.

제23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본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군수는 시책추진 유공자 또는 유관기관 단체에 대하여 「거창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③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출산장려지원 신청서

(출산장려금, 산전진찰비, 육아용품)

(접수번호: )

임산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보호자)성명			
출생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순위	① 첫째아이 ② 둘째아이 ③ 셋째아이 ④ 넷째아이 이상						
장려금 신청횟수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분만 및 진찰 병원					
주소 (전화번호)						H·P		
입금 은행 및 계좌번호			(예금주)					
육아용품 10만원 상품권 지급 (원하시는 상품권에 √하세요.) ①모아베이비 ②베베양슈(해피랜드) ③아가방 ④알로앤루 ⑤기타(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table border="1" data-bbox="331 1216 593 1435"><tr><td>읍·면·장 확 인</td></tr><tr><td> </td></tr></table>							읍·면·장 확 인	
읍·면·장 확 인								
200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산전진찰비 명세서 1부, 통장사본 1부 ※ 참고사항 ○ 출산장려금: 둘째아이 10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0만원 지원 - 둘째아이 : 출생시 1회 전액 지원 - 셋째아이 이상 : 4회 분할 지급(매회 신청서 작성·제출) (출생신고시 신청서에 의거 200만원 지급, 그 후 1년마다 100만원씩 지급) ○ 육아용품 상품권 : 둘째아이 이상 지원(10만원 상품권) ○ 산전진찰비 : 진찰비 명세서 첨부, 10만원 이내 지원								

[별지 제2호서식]

##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

신청인 (보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집:	HP:	
지원 대상자 (영유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와의 관계		의 재 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와의 관계		의 재 자녀			
입금 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 번호	
<p>「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양육비를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거창군수 귀하</p>						
<b>행정기관확인사항</b>						
확인내용	확인자			비고		
	직	성명	확인			
조례 제11조 제1항 적합 여부 적합(    ), 비적합(    )						

